

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3. 7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3. 7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3. 18 (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
- 나. 제안사유
 -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됨으로 동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함.
- 다. 주요내용
 -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안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 병 향)

-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실비변상금이 지급됨으로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남도의 검토지시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생 략

5. 토론요지

생 략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첨 부 :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

의 안	97 - 25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7. 3. 7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함.

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